

#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미경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13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4월 19일

발 의 자 : 김미경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정자(양천), 박양숙, 김혜련,  
장우윤, 김용석(도봉), 조상호,  
오봉수, 이윤희, 권미경, 김희걸,  
서윤기, 박기열, 신원철, 김문수  
의원(14명)

## 1. 제안이유

- 가. 노인과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함.
- 나.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면 제55조의2제4항에서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,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」에 명시된 주민공동시설에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각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의 유형으로 노인복지시설·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의4 제3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택법」, 「건축법」,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
- 나. 예산조치 :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노인복지시설·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.(단,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한다.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의4 (주민공동시설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8조의4 (주민공동시설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 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노인복지시설·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.(단,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한다.)</u></p>

##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5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사업을 실시할 경우 주민공동시설로써 노인·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은 없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김 미 경